

## 2025년 1인창조기업지원센터「사업화 지원사업」공고

초기창업자 및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입주(졸업)기업의 판로확대 및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도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사업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일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 1 사업 개요

#### □ 사업목적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졸업)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화 역량강화 지원을 통한 성과 창출 도모
- 크라우드 펀딩과 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 유통채널을 활용하는 창업 기업의 상품 인지도 제고와 초기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상세페이지 기획 및 디자인 제작을 지원

#### □ 지원대상

- (선택형 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및 '23년도 이후 졸업기업  
(상세페이지제작 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호남권 초기창업기업

#### □ 지원내용

- 초기창업기업 및 입주(졸업)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화 지원

#### □ 지원금액

- 총 22백만원(선택형 18백만원, 상세페이지제작 4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자부담금
선택형 및 상세페이지제작	100%(부가세 미포함)	100%	-
• 총 사업비 및 정부지원금 구성 예시 : 정부지원금(100%)이 3백만원일 경우 - 3,000천원(100%) = 3,000천원(100%) + 부가세(300천원) 별도 기업부담 ▶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등 부가세 포함 가격(3,300천원)으로 구성 • 총 협약(사업비)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는 금액으로 함			

#### □ 지원규모 : 총 8개사 내외

사업명	사업기간	지원대상	지원내용	사업비	지원규모	비고
선택형 지원사업	'25. 7. ~ 11.	입주(졸업) 기업	마케팅/ 시제품제작	18백만원	6개사 내외	기업 당 3백만원
상세페이지 제작지원사업		호남권 초기창업 기업	상세페이지 제작	4백만원	2개사 내외	기업 당 2백만원
합 계				22백만원	8개사 내외	-

####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 '25. 10. 31.(금)까지

#### □ 지원내용 \* 중복신청 가능

구분	세부내용	지원금	
선택형 지원사업	○ 홈페이지(모바일 웹)제작	최대 300만원	
	○ 홍보 동영상 제작	최대 300만원	
	마케팅	○ 종이·전자 카달로그 제작/인쇄	최대 200만원
		○ 시각·포장·제품 디자인 개발/인쇄	최대 200만원
	○ 브랜드 디자인(CI/BI 개발)	최대 200만원	
시제품	○ 시제품 제작비(시제품 개발 재료비)	최대 300만원	
상세페이지제작 지원사업	상세 페이지 제작 ○ 클라우드펀딩을 위한 상세 페이지 제작 ○ 상세페이지 제품 1건 기준, 최소 3~5 스크롤 분량	최대 200만원	

- ※ 총 지원금(3백만원) 기준으로 지원항목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 가능
- ※ 지원금 내 부가가치세 집행 불가(ex. 용역대금 부가가치세 10%)
- ※ 지원기업 선정 확정 이전에 집행한 금액에 대하여 소급적용·지원 불가

2

신청 · 접수 안내

□ 신청기간

- (공고기간) '25. 7. 2. (수) ~ 7. 15. (화)
- (신청기간) '25. 7. 9. (수) ~ 7. 15. (화), 17:00까지

□ 신청방법 : E-Mail 접수

- [shlim@jcia.or.kr](mailto:shlim@jcia.or.kr)(061-280-7490)접수 후 전화 확인 必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 첨부 서류 각 1부

<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 필수 제출서류 >

제출서류	선택형	상세페이지	비고
① 사업 참여신청서 1부	○	○	첨부파일 참고
② 사업계획서 1부	○	○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	○	
④ 견적서 및 사업자등록증(외부용역업체) 각 1부	○	○	공고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	
⑦ 기타 진흥원 요청자료	요청 시		-

3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 신청자격

- (선택형) 공고일 기준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및 '23년도 이후 졸업기업 (상세페이지 제작)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호남권 초기창업기업

□ 신청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25.7.15.)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25.7.15.)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체재조치 받고 있는 자(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4

**평가 및 선정**

□ **평가방법** : 서면 및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

① **요건검토** :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등 검토

② **서면 및 발표평가** :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제출 서류에 대해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기업)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청 포기로 간주 함

구분	심사항목	배점	평가점수
1인창조	- 지원분야와 기업과의 연계성	20	70점 이상 "선정"
	- 지원 금액의 적정성	20	
	- 수행과제 완료 가능성	20	
	- 결과물 활용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20	
	-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	20	
합 계		100	

□ **최종선정** : 평균값이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우선 선정

□ **기타사항**

- 사업수행 적격 기업이 없을 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기업이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차 순위 기업을 순차적으로 선정할 수 있음(70점 이상 기업에 한함)

□ **추진일정**

구분	절차	일정	주요내용
공고	사업공고	7.2.(수)~7.15.(화)	진흥원 및 센터 홈페이지
	↓		
접수 및 선정 (공통)	신청서 접수	7.9.(수)~7.15.(화)	신청서 등 필요서류 제출
	↓		
	선정평가	7. 23.(수) 예정	적정성 검토 및 신청서 평가
	↓		
	선정 통보	7. 25.(금) 예정	선정 통보 및 제출서류 안내
	↓		
	협약 체결	7. 30.(수) 예정	협약체결
사업 수행	↓		
	과제수행	협약일~10. 31.(금)	과제수행
	↓		
	결과보고서 접수	10. 31.(금) 까지	결과보고서, 사업비집행실적보고서
	↓		
	최종평가	11. 14.(금) 예정	사업추진결과평가
	↓		
지원금 지급	11월 중	사후지급(대행업체에 비용 지급)	
사후 관리	↓		
	성과관리	'25. 11월 ~	후속지원 정보 제공 및 증빙 제출

\* 상기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① 본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②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④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는 고발조치됩니다.

- '22~24년 창업진흥원 및 진흥원 지원사업을 통해 기 지원받은 세부과제(결과물이 동일 등) 신청 불가하며, 중복신청이 확인된 경우 탈락 및 선정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동 사업과 타 사업을 동시에 지원받는 경우 본 사업의 세부과제 수행을 위해 타 사업의 사업비와 중복·혼용하여 집행할 수 없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 내용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및 협약이 취소되고 진흥원 및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화지원사업 일정 및 공지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동 사업 세부 관리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예비 창업자의 경우, 사업종료 전까지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사업비 교부 위함)

- 사업 신청 문의 : AX지원팀 임승현 수석(061.280.7490)